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65호
2.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 등 16명
3.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5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시행으로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기존 자유학기(년)제가 자유학기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에서 ‘한

학기'로 변경함(안 제2조).

2.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중 추진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3. 교육감이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신설).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5일 전병주 의원 등 16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5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년)제가 자유학기제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주요사항을 구체화하며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자유학기(년)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학생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¹⁾
- 동 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관련 국정과제로 2012년부터 시행이 추진되어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유학년제 도입 추진에 따라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²⁾

1) 교육부(2015.11.2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9.12.17.),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그런데 2022년 12월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년제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의 주요 영역과 시수 등을 조정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5 학년도부터 자유학년제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자유학기제는 활동 영역도 4개에서 2개로 통합되고, 시수 역시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제도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표-1]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개정 교육과정 비교³⁾

항목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기간	중1 자율적 선택 (1학기 또는 2학기)	중1 자율적 선택 (1학기) ※ 1학년부터 시작, 2025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주요 영역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4개 영역 필수 운영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 2개 영역으로 통합
교과 및 체험활동 시수	20% 범위 내 증감 활용 (170시간)	20% 범위 내 증감 활용 (102시간)
시험 여부	자유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음	자유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음

○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다양성 저하, 자유학기 외 활동 편성의 어려움 등이 현장에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 특성으로 인해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유학기(년)제를 적정화했다는 것을 자유학기 관련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⁴⁾

- 상기된 사항은 자유학기(년)제 도입 이후 학생 성적에 관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확대되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교원의 71.4%, 학부모의 68.6%가 공감하였음을 나타낸 결과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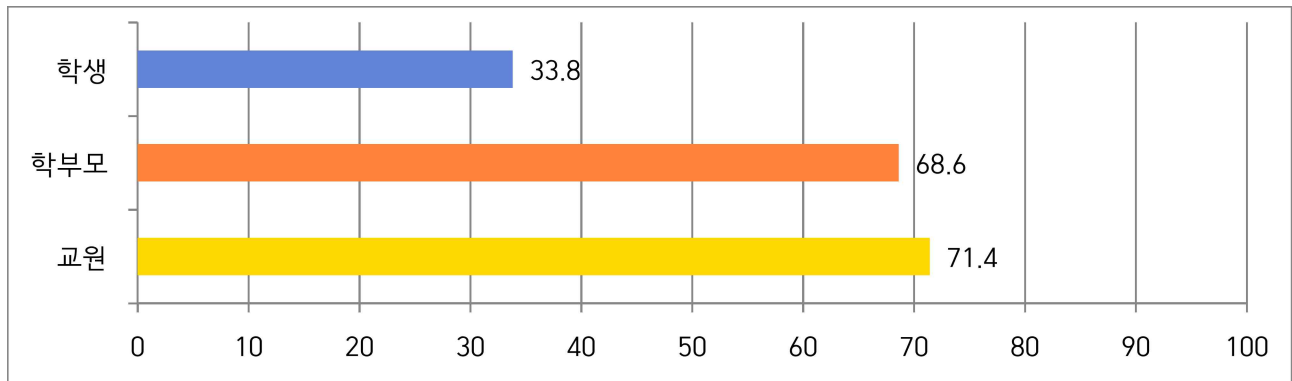
3) 교육부 보도자료(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붙임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4) 뉴스1(2024.8.25.), “시험 안 보는 '중1 자유학기'...내년부터 한 학기만 한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20157> (검색일 2024-12-12)

5) 에듀인뉴스(EduinNews), (2020.10.25.), “자유학기(년)제 "학생은 만족, 교사·학부모는 부정 평가 높아",

**[그림-1] 자유학기(년)제 도입 후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확대 여부
관련 긍정 응답 비율**

(단위 : %)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유학기제 시수 축소 등에 대응하여 제도 시행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학기제 시행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기간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에서 ‘한 학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35> (검색일 2024-12-12)

해당 설문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이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유학기(년)제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임. 2020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등 전체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이는 개정 취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유학년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을 ‘한학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개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2)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은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개정 사항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추진목표와 자원 조달 방안을 사업계획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기획과 시행 전반에서 효과성과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진로 체험 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중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운영 매뉴얼, 도움자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안내·장려하고 있습니다.⁶⁾

6)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sfree.sen.go.kr/bbs/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0 (검색일 2024-12-12))

[표-2] 마을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연천중)⁷⁾

	장소(주체)	교육 활동 내용	관련(체험, 융합 등)
마을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천중)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 한옥 건축 박물관 체험 · 한옥의 구조 및 전시 체험	사회, 역사, 미술, 국어 연계 수업
	향림도시 농업체험원	· 논과 습지 관찰 및 꽃과 식물 생태체험 · 천연염색과 비누 만들기 · 씨앗놀이 등 흙 체험	과학, 기술·가정 연계 수업
	연극 공연 관람	·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관람하고 출연 배우와 관객의 대화를 통해 연극배 우라는 직업 탐구	연극배우와 시나리오 작가 직업 체험
	4차 산업 체험	· 은평구립도서관 · 미래 유망직업에 대한 선체험을 통해 자신의 직업 역량 배양 기회 ·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 키우기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직업 체험

○ 따라서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비추어 볼 때 시행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⁸⁾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송여정(2180-8265)
----------	----------------	-------	----------------------------------

7) 「2024 한 권으로 보는 자유학기(년)제」 p19. 참고.

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2. 17., 2010. 6.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9., 2013. 2. 15., 2013. 3. 23., 2020. 2. 28., 2024. 1. 23.>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9. 15., 2017. 11. 28., 2020. 2. 25.>